

한국발육발달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육발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정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전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자의 책임)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서 책임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2.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조 (연구의 개방)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논문의 기여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6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위원회의 기능)

1. 학회와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대상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8조 (생명 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9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4.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 1) 소명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 5)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7.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